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정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조 (운영위원회 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13명으로 한다. (학부모위원 6명,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)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수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변동시 위원정수를 조정한다.

제 3 조 (운영위원회 기능)

-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- 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 - 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 -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-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
 - 8. 학교급식
 - 9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-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・운영
 -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- 12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학교규정의 제·개정
- 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방과 후 프로그램, 학생수련활 동(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 외한다.
- 3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4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- 5.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
-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 청한 사항
- 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 - 1. 학부모 전체회의
 - 2. 학교 홈페이지
 - 3. 가정통신문
 -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
-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학생

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수 있다.

- 1. 학생 설문조사
- 2. 학생회(대의원회)
- 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
- ⑥ 제2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.
- ⑧ 운영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2 장 위원의 선출

제 4 조 (위원의 선출시기)

- ① 위원의 선출은 당해 년도 3월에 실시한다. 단,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(3월 21일까지) 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(3월 30일)까지 선출한다.
-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(위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)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5 조 (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)

① 위원의 선거인 명부작성, 선거공고, 후보자 등록 접수,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, 투·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, 선거록 작성,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(후보추천)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입후보를 아니 할 학부모 중 학부모회(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)에서 추천된 자로 5인 이상 7 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한다.
-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후보 입후보를 아니 할 교원 중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교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하되 연령별, 직급별,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학교장 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6 조 (학부모위원 선출)

- ① (구성) 학부모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, 학년별로 2인을 선출한다.
- ② 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서신, 우편, 전자토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. 다만,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, 우편,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.
- ③ (공고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(선거인 명부 작성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 3부(보존용, 열람용, 투표용지 수령용)을 작성한다. 단, 당해 학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자녀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한다.(예: 최상급 학년의 자녀, 타 자녀는 비고란에 사유 표시)

- ⑤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⑥ (결격사유 조회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의2를 근거로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.
- ⑦ (선거 공보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 자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보한다.
- ⑧ (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)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투표장을 설치한다.
- ⑨ (투표실시) 선거 당일 투표 전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고, 투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.
- ① (당선자 결정 및 공고)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한다.

단,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.

제 7 조 (교원위원 선출)

-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2배수 이내 후보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. 단, 추천 인원이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의 단기명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2배수를 정한다.

제 8 조 (지역위원 선출)

- ① 지역위원은 2인으로 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 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의 신분

제 9 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위원의 자격)

-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-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학부모,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.
-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-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 11조 (위원의 의무 등)

-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2 조 (위원의 자격상실)

-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공통 사유
 - 가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

는 경우

- 나.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- 다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
- 라.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
- 마.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59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격 상실
- 2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- 3.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·전학·퇴학한 때다만,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
- 4.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 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, 그 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조직

제 13조 (임원)

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한 위원을 당선자로 한다. (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, 4월 15일까지)
-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

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14조 (소위원회 설치)

-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예비심사를 수행하며 예비심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.
- ③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.
-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 하며 간사는 위원장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소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을 넘지 못하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 15조 (회기)

-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.
- ②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, 회의 개최 15일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·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의 개회,휴회,폐회 및 기타 절차는 일반 회의 규칙에 따른다. 제 16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17조 (안건의 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거나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

제 18조 (회의 원칙)
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 19조 (회의록 작성)
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 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한다.

제 20조 (회의 운영)

-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.
-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 또는 학부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21조 (운영위원회 운영경비)

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 22 조 (시행의무)

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

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3조1항과 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지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제3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합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규정 개정)

-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-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,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운영위원회 자문 및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.
- 3.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정에서 정한

임기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
- 4.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시 긴급을 요할 시는 선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.
- 5. 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